

[서식 예] 답변서(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금전채권의 경우 무자력 항변)

답 변 서

사 건 2000가단0000 대여금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는 소외 □□□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금 50,000,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위 □□□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, □□□을 대위하여 □□□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.
- 2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바, 피보 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이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3. 그런데 소외 □□□는 재산으로 ○○시 ○○동 대 150㎡를 보유하고 있는 등 충분한 자력이 있습니다.
- 4.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

등기사항전부증명서

2000. 0. 0.

위 피고 🛇 🛇 (서명 또는 날인)



괴호피스	무실 가는 계속에서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
제출부수	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답변서의 제 출	·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 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 법 제256조 제1항).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 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
	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. ·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).
의 의	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(민사소송법 제148조, 제428조, 제430조).
기 타	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, ·청구취지: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·청구원인: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,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,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 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.
	·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그 결과 의제자백(자백간주)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789 판결).
	· 응소관할(변론관할)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(대법원 1980. 9. 26.자 80마403 결 정). ·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
	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 (변론 전체의 취지)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(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1424 판결). •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, 그 관
	·모등인의 모등의사의 근무는 당사자가 기대에 된역하게 된 당기와 정취, 그 된 여 형식 및 내용,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,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,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(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2000다2566 판결).